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재 난 안 전 실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재난안전실

☐ 총 2건 건의

☐ 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지하안전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법 개정 요청	지하안전과
2	공유재산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「사법경찰직무법」 개정 건의	도로시설과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지하안전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법 개정 요청 (지하안전과, '25. 8. 7.)	☐ 현황 ○ 현행법은 지하안전평가 검토 등 거의 모든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, 시행령에서 그 권한의 대부분을 시·도지사를 배제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☐ 문제점 ○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대응 등 지하안전관리에 있어 서울시와 같은 광역지자체의 역할 및 권한 부재 ☐ 건의내용 ○ 시·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게 건의 ○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범위를 시·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건의 ○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까지 확대 건의	(국토교통부)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공유재산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「사법경찰직무법」 개정 건의 (도로시설과, '25. 8. 19.)	☐ 현황 ○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는 단속 요구가 많음 ☐ 문제점 ○ 공유재산의 불법 전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·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☐ 건의내용 ○ 공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	(국토교통부)

제332회 시의회 정례회
도 시 안 전 건 설 위 원 회
2025. 9. 1.(월) 10:30

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

2025. 9. 1.(월)

재 난 안 전 실

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 보고

☐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,
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에 대해
보고 드리겠습니다.

☐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,

- 첫 번째는 실질적인 지하안전 예방 및 대응방안을 도모하기 위해
시·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게
하는 내용 등으로 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’을 개정 건의
하였습니다.
- 두 번째는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
위해 실효적으로 단속하고자, 공유재산 관리 공무원에게 사법경찰
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
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’을 개정 건의 하였습니다.

☐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

2025년도 3분기 국가기관 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에 대한
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